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

강 남 철

사회주의법건설은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준수집 행하여 정연한 법질서를 세우는 활동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인것만큼 모든것이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다.

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 는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의 제정과 집행, 법의 해석과 적용을 비롯한 모든 활동은 당의 령도밀에 진행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제3권 384폐지)

사회주의법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보장한다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법건설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법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이 그 근본목적에 맞 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담보이다.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법을 제정하고 그 리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법을 집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법건설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건설이 그 근본목적에 맞게 옳바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법건설에 서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은 사회주의법건설이 그 근본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지도적 지침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인민의 의사와 요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을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

수령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분석종합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사상을 제시한다. 수령이 제시한 법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따르는 법건설의 가장 정확한 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수령이 제시한 법사상에 기초하여 법건설을 진행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건설사업이 뚜렷한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일관하게 진행될수 있다.

수령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법건설의 방도들을 제시한다. 수령은 혁명의 주객관적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법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그 수행과업들을 제시한다. 수령이 내놓은 법건설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법건설을 진행하여야 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풀어나갈수있으며 법건설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수령의 사상은 당의 령도를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게 되며 수령의 령도를 받게 된다. 당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사상은 당의 법건설정책으로 제시되게 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법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법건설에 대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법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모장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사업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게 인민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사업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옳바로 수행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은 국가를 통하여 집행된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고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할수 있는 권력기관들과 수단들을 직접 장악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사회에 대한 직접적관리는 국가에 의하여 실현된다. 국가에 의하여 사회제도들이 수립되고 운영되며 사회성원들이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움직이게 되며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정치를 직접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그 본성에 맞게 활동할수 있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활동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 지침이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의 활동은 법률적형식의 면에서 볼때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법화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감독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법건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당의 령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도록 법건설을 진행하는것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새것을 창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법건 설은 혁명과 건설의 주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과 정 확한 전략전술에 의거할 때 옳바로 진행될수 있다. 사회주의법건설의 이러한 조건은 수령 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혁명적당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사회주의국가가 법건설에서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다.

사회주의법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법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과정에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으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립장에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법건설의 전 행정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은 혁명적당의 령도밑에서만 확고히 견지되고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그 본성에 맞게 법건설을 진행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법건설정책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집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과 임무로 하게 된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법건설사업에 인민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며 사회주의법건설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그 담당자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주의법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하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의 제정과 집행의 전과정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야 모든 법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될수 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자각 적으로 지켜나가려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생활해나갈 때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가 수 립될수 있다.

법건설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의 령도를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는것과 함께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힘있게 조직동원한다.

당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어떤 혁명과업이 제기되든지 언제나 그 것을 군중속에 해설침투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 키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법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문제도 인민대중이 법건설의 주인이라는 옳은 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떨쳐나설 때 원 만히 해결될수 있다.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의 법건설정책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설복과 교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당이 제시한 법건설정책의 본질과 정당 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관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한다. 사람들을 법건설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업은 각이한 환경과 조건, 각이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은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대중운 동을 조직하고 전개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 나간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법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책임과 역할의 원만한 수행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을 사회주의법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해 나가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 바지하는 혁명적인 법을 건설하여야 할것이다.